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 21 선고 2020가합74477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200806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 21 선고 2020가합74477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이경우, 이창용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일리오스

담당변호사 송재우

변론 종결 2021. 11. 5.

판결 선고 2022. 1. 21.

주문

1. C가 2019. 2. 19.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601,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파주시, 발행일 2019. 2. 19.,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6,767,1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그 금액을 167,767,123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166,767,123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166,767,123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평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2009. 5. 8.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09. 6. 8., 이자 월 3%로 정했는데, C 등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996)으로부터 2012. 10. 23.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6,000만 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2012.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2) 원고는 C 등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확정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2476)으로부터 2014. 8. 29.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863,012원에 대하여 D은 2014. 6. 18.부터, C는 2014. 6. 17.부터, E은 2014. 6.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또다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6464)으로부터 2017. 11. 17. 'D,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99,735,423원에 대하여 D은 2016. 11. 3.부터, C는 2016.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C의 약속어음 발행

1) C는 2019. 2. 19. 피고에게 액면금 601,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파주시, 발행일 2019. 2. 19.,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다음, 그에 관한 공정증서(증서 2019년 제3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도 작성해 주었다.

2) C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의 추심행위

1)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채권을 6억 100만 원으로 하여 C가 파주시 F, G, H 토지에 관한 2015. 1. 29.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I로부터 지급받을 잔금채권 중 청구채권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채32590)을 받았다.

2) 이후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I을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4107)으로부터 2020. 7. 8. 'I은 피고에게 2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3) 피고는 위 추심금 판결에 기하여 I 소유의 파주시 F 및 G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0. 7. 14.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을 받았고, 2021. 6. 22. 위 경매절차에서 166,767,123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 11, 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C에게 확정판결에 기하여 1,521,656,00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2. 19. 배우자인 피고에게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는바, 이는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C가 I에게 가지고 있던 매매잔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166,767,123원을 배당받았는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가 배당받은 166,767,1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앞서 1.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된 2019. 2. 19.를 기준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C에 대하여 1,013,161,643원(=3억 6,000만 원1) +427,232,876원2) +225,928,767원3))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추가로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 기하여 C에 대하여 204,015,280원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2476)과 305,786,792원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6464)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응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합계 1,522,963,715원(=1,013,161,643원 + 204,015,280원+305,786,792원)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변제받은 금액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 6 내지 10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K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 중 2억 7,000만 원을 대위변제받은 사실, 원고가 C의 I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채39100)을 받아 I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L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나2011478)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21타채525958)을 받아 2021. 9.

16. L가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M)에서 받을 배당금 209,144,187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의 합계 619,144,187원(=2억 7,000만 원+1억 4,000만 원+209,144,187원)은 피보전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다만 피고는 위 금액 외에도 원고가 I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에서 배당받은 1억 4,000만 원도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1억 4,000만 원을 배당받긴 하였으나,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확정되지 않아 위 배당액이 공탁되었을 뿐 아니라 I이 원고의 배당금지급청구권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등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여 원고가 위 금액을 수령할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또한 피고는 현재 진행 중인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N)에서 그 대상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20억 원 이상이므로, 향후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을 고려하면 피보전채권은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배당을 받는다면 얼마를 배당받을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C에 대하여 903,819,528원(=1,522,963,715원-619,144,187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가공의 어음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2, 5, 6, 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는 1998. 9. 3. L로부터 서울 동작구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해 11. 19.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2. 12. 27. 배우자인 피고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였고, 이후 피고는 2006. 6. 14. 주식회사 P(이하 'P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C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C는 같은 해 11. 20.경 P은행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② 피고는 2010. 1. 19. 위 근저당권의 원인인 대출계약상 채무자 지위를 인수하고, 2011. 4. 15. P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P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원고에게 사업비용으로 위 차용금을 지급해 주었다.

③ 피고는 2016. 3. 25. Q 외 2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같은 해 5. 9. 그 매각대금으로 C의 대출금채무 6억 원을 변제하였다.

④ C는 2010. 11. 23. 그 소유의 파주시 R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가 원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증여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1954, 2014가합52018(병합), 2014가합52780(병합),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을 선고받았다.

3) 위 인정 사실에 위 1.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P은행에서 합계 6억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위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소유권자로서 이익을 취득하거나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위 대출금채무가 변제된 시점은 2016. 5. 9.인데 이 사건 약속어음은 그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지난 2019. 2. 19. 발행되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로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C의 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을 한 상황이었고, C는 2010. 11. 23.에도 피고에게 그 소유의 다른 토지를 증여하였다가 이후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를 고려할 때 C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허위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가공의 어음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 1) 이와 같이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 2) 원상회복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에 터잡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았거나 변제 등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1.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터잡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채32590)을 받은 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받은 판결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취소되기 전에 이미 배당금 166,767,123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피고를 상대로 166,767,123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C가 2019. 2. 19.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66,767,1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한홍

판사최태진

판사강대현

1) =2억 원+1억 6,000만 원

2) =2억 원에 대하여 2012. 1. 9.부터 2019. 2. 19.까지(2599일) 연 3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

3)=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2019. 2. 19.까지(2577일)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

4)=217,863,012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9. 2. 19.까지(1709일)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

5)=899,735,423원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9. 2. 19.까지(827일)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